

주민참여예산!
도민 손으로 193 (일구삼)

2021 경상남도 도민예산 학교



경상남도
GYEONGNAM

목차

1.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참여예산	5
2. 경남형 참여예산을 소개합니다.	17
3. '예산'에 대해 알아보까요?	57
4.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변화된 경남	77
# 부록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07
2. 주요 재정용어	115





2021 경남도민 예산학교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참여 예산!



참여가 만드는 일상의 행복 주민참여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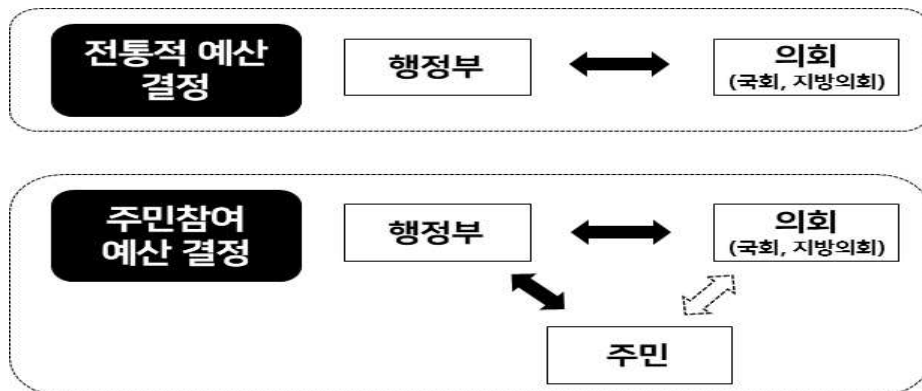
1. 주민참여예산제란?¹⁾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예산운용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민은 참여예산을 통해 (지방)정부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예산편성), 그리고 결정한 예산을 실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집행·결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을 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산을 잘못 결정하거나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여예산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 예산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권자인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참여예산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이때 주민은 개인적 혹은 단체로 직접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게끔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1)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2. 참여예산은 어떻게 시작했을까?²⁾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오(Porto Alegre)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주민이 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오(Porto Alegre)시에서 주민이 직접 예산을 사용할 곳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은 2000년대 초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4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북구, 경기도 안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지방재정법을 다시 개정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3. 참여예산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참여예산 발전과정

- 2002년 :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요 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공론화
- 2004년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 2006년 :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 권고
- 2011년 : 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 2017년 :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시범 운영
- 2018년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제정 완료
 - 주민 참여범위를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에서 전체 예산 참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경상남도 참여예산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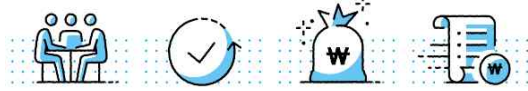
- 2009년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10년 ~ 2017년 : 분야별 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개최
- 2011년 ~ : 도민예산학교 운영
- 2012년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
 - 조항별 분류를 세분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 및 도민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2012년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
- 2018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52억원 규모)
- 2019년/ 2020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대폭 확대(130억원)
- 2019년/ 2020년 :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확대(170억원)



관련 법령 정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참여예산 사업 제안 과정³⁾



- 1) 우선 공식적인 제안에 앞서 주민이 개인적으로 혹은 모임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거나 필요한지 등을 상의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냅니다.
- 2)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주민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지방)정부의 참여예산 제안창구에 접수합니다.
- 3) 이렇게 모인 주민제안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검토와 주민위원의 숙의를 통해 사업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4) 경상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최종 결정을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 5)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지방)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다음해 예산안에 포함합니다.
- 6) 유의할 점은 주민제안사업이라할지라도 의회의 예산 심의는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5. 누가 참여할까요?⁴⁾



국민참여예산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법적인)주민뿐 아니라 경상남도에 있는 직장, 학교에 다니는 분도 차별 없이 참여예산 과정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참여 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도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예산과 정책은 경상남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 운용 과정에 직접 업무적으로 관여하는 경상남도 및 시·군의 공무원과 출연·투자기관 직원은 조례에 의해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4)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6. 무엇을 할까요?⁵⁾



1) 전체 예산과정에 참여 합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는 일을 주민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여 예산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제안된 사업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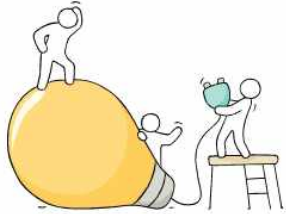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면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를 깊이 고민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과 함께 모든 주민이 투표를 통해 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4) 실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실행 중인 사업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모든 주민은 낭비하고 있거나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익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를 한 주민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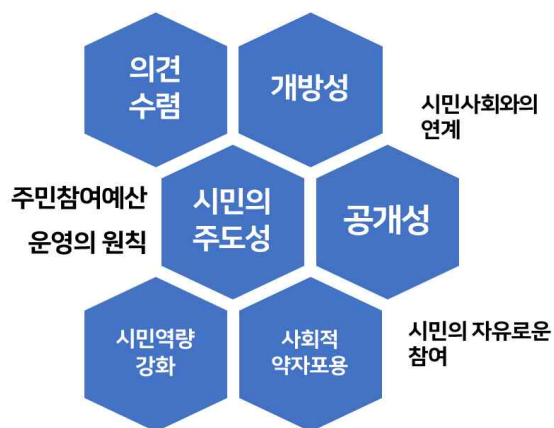
5)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7. 어떻게 운영할까요?⁶⁾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을 운영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 주민참여의 범위와 정도, 주민에게 부여한 권한의 수준, 실질적 운영 주체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 1) 다수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 2)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 3)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4) 주민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 5) 전체 예산과정과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 6)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7)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기반을 조성합니다.
- 8)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제도운영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6)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8. 참여예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⁷⁾



참여예산은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에도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은 참여 의지가 생기고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더불어 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반영되면서, 꾸준히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열린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는 ‘좋은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 2) 주민의 감시를 강화하여 ‘나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 3) 어떤 예산이 좋은 예산이고 나쁜 예산인지에 대한 판단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숙의)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7)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2021 경남도민 예산학교

경남형 참여예산을 소개합니다.



참여가 만드는 일상의 행복 주민참여예산

1. 참여예산 어떻게 참여할까요?

경남의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주도형 사업과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도민주도형 사업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한 제안사업은 매년 정기접수기간(3~5월)에 접수 완료되어 처리됩니다. 정기 접수기간 이외의 기간에 수시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시기에 따라 다음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이며,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도 주민참여예산 총회 보고 후 최종 승인됩니다.

도민이 경남을 바꾼다 참여예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대구요?
도민주도형 사업은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수시로 접수 할 수 있네요.

도민주도형의 정기 접수는 매년 3~5월!
나도 도전 해 봐? 주변 엄마들과 고민해 봐야지!
평소 생각했던 것을 제안하면 되는거잖아!



지역 주도형 사업은 마을 총회에 제안해도 되겠네.
그런데, 불편해! ㅜㅜ 어? 청년 참여형도 있네.
와~ 친구들과 의논해 봐야겠다.

청소녀에게도 기회가 있네요!
꼭 도전해 봐야지!
청소녀 참여예산 제안 대회!



도민주도형 사업

■ 도정참여형

1) 도정참여형 사업이란?

- 도정 전반에 걸친 道 소관 사무로 도비투자 대상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2) 사업규모 : 총 50억원

3) 사업비 : 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

4) 대상사업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도 소관사업으로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사업

※ 시·군 사무를 도정 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5) 집중공모기간 : 매년 3~5월 ※ 상시접수 가능

6) 신청자격 :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과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7) 신청방법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budget/>)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 추진단/ 제안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8) 부적격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9) 제안사업 신청 절차

사업공모	사업검토 및 보완	분과위 심사 (투표대상사업 선정)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최종선정	예산안 편 성
(3~5월)	(3~6월)	(7월)	(8월)	(8월말)	(9~10월)
사업제안 (도민→도)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소관부서, 지역연구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도민	주민참여 예산총회	도



■ 도시군연계형

1) 도시군연계형 사업이란?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제안

2) 사업규모 : 총 50억원(도비 20, 시·군비 30억)

3) 사업비 : 일반사업 3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 사업별 최대 40%까지 도비 지원,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 5억 원(총액 기준)

4) 대상사업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도민공모,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사업 중 道の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5) 집중공모기간 : 매년 3 ~ 5월 ※ 상시접수 가능

6) 신청자격 :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 및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7) 신청방법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budget/>)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 추진단 / 제안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8) 부적격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9) 제안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모	사업검토 및 보완	분과위 심사 (투표대상사업 선정)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최종선정 (전자투표)	예산안 편 성
(3~5월)	(3~6월)	(7월)	(8월)	(8월말)	(9~10월)
사업제안 (도민→ 도, 시군)	시군사업부서 (도 소관부서 사전 협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등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도민	주민참여 예산총회	도 및 시군 소관부서



■ 청년참여형

1) 청년참여형 사업이란?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2) 사업규모 : 총 10억원

3) 사업비 : 일반사업 2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4) 대상사업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 ※ 시·군 사무를 청년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5) 집중공모기간 : 매년 3 ~ 5월 ※ 상시접수 가능

6) 신청자격 : 경남도민

- ※ 단, 경상남도과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7) 신청방법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budget/>)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 추진단 / 제안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8) 부적격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9) 제안사업 신청 절차

사업공모	사업검토 및 보완	분과위심사 (투표대상사업 선정)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최종선정	예산안 편성
(3~5월)	(3~6월)	(7월)	(8월)	(8월말)	(9~10월)
공모사업제안 (도민 → 도)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소관부서 지역연구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도민	주민참여 예산총회	도

참고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제안 신청인 ➡ 사업 제안 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입력			
신청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자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 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제안사업 내용			
분야	선택(안전·행정, 여성·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교통, 경제·일자리, 기타)		
사업명			
사업대상 (수혜자)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위치	선택 (□경남도 전체, □시·군(시·군명 :) 경남 시·군 도로명 (지번주소)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2022.00.00 ~ 2022.00.00(1년)
사업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사업효과			
기타자료			
신청정보 확인경로	☐ 신문 ☐ TV ☐ SNS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 소식지 ☐ 캠페인 ☐ 기타()		

주민자치형 사업

1) 주민자치형 사업이란?

-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2) 사업규모 : 총 60억원(도 24, 시군 36)

- 시군 읍면동 수에 따라 기본액 배정
- 시군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 및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 주민자치회 전환 예정 읍면동이 많은 시군에 예산 확대(인센티브) 지원 조치

3) 사업비

- 주민자치회(전환 예정 읍면동) : 20백만원 ~ 80백만원
- 주민자치회 미구성 읍면동 : 20백만원 ~ 50백만원
- ※ 제안사업의 하한액(20,000천원)은 준수하되 제안사업이 우수하고,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 지원 가능

4) 읍면동 지역회의의 구성요건

- 인원 : 최소 10명 이상
- 성별 : 남녀 중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 및 리·통·반장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5) 대상사업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지역의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물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등

6) 추진방법

- 지역회의의 주도로 사업 발굴(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필요)

- 당해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동체 사업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 시군 참여예산 위원회 심의·선정

7) 부적격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8) 제안사업 선정 절차

사업발굴	타당성 검 토	실행계획 수정	읍면동 사업 선정	시군 사업선정	선정사 업 제 출	사업승 인	예산안 편 성
(3~6월)	(6월까지)	(6월까지)	(6월)	(6~7월)	(7월)	(8월)	(9~10월)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회의	실행가능성, 적격여부 등 (시군 부서,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회의 등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동의서등 (40명이상)	시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시군 → 도	도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	도, 시군



참고

주민자치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 개인정보는 제안사업 신청 관련 목적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음				
신청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등 대 표	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읍·면)동장	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등)				
사 업 위 치				
소 요 예 산	백만 원			
산 출 근 거	예시) ○ 재료구입 : ○외 종 × ○,○○○원 = 천원 ○ ○			
사 업 기 간	2022. 월. ~ 2022. 월.			
사 업 내 용 (구 체 적 추진방법 등)				

2.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참여예산사업 선정

1) 참여예산사업 유형

도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50억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
	도시군연계형 (50억원) ※시군비 매칭	- 도와 시군이 연계 추진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군 소관 업무
	청년참여형 (10억 원)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주민 자치형	읍면동 (60억원)	-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지역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계획형 사업

2) 사업제안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 단, 경상남도과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의견제시 : 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사업 심사 시까지)

3) 최종 선정

- 도민주도형(도정참여형, 도시군연계형, 청년참여형)
 - 사업별 투표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도정참여형은 50억원 범위 내에서, 도시군 연계형은 50억원 범위 내에서, 청년참여형은 1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 선정 (참여예산위원+도민투표)
 - 투표반영비율

구 분	참여예산위원	일반도민
반영비율	60%	40%
투표방법	총회 현장pc 또는 모바일 투표	모바일, 재택PC, 오프라인 투표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 감안, 투표 사업 수 결정	

- 지역주도형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
 - 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보고 후 승인



3.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경남의 노력!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합니다.

1)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란?

경상남도에서는 청소년을 “미래세대의 주역”이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인식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경남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합니다.

2) 사업 개요

- 대 회 명 : 경남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예산”
- 일 시 : 매년 상반기
- 대 상 : 경남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 내 용 : 제안내용 서류(예선), 발표심사(본선) 및 시상 등
- 주최·주관 : 경상남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 후 원 : 경상남도교육청

3) 참가방법

- 대 상 : 경남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 ※ 경남 청소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거나 경남 소재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 제안주제
 -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교육·문화·안전·권익확대 등)
 - 지역사회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변화·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 기타 경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행사성사업 5천만원 이내 사업 제안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budget>)를 통한 접수
[사업제안]-[청소년제안대회]-[제안신청]
- 시상 : 4팀(도지사상, 도교육감상, 도의회의장상, 도청소년지원재단장상)
 - ※ 본선진출팀 전원 자원봉사실적 인정

- 제안처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음
 - ※ 절차 : 제안대회(6월)→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6~7월)→ 주민참여예산 총회(8월)
→2022년 본예산 편성(10~12월)

4) 예선/본선 안내

- 예선심사
 - 심사방법 : 소관부서 검토, 심사위원단 평가
 - 심사기준 : 법령적합성,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검토
 - 발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별 연락 등
- 본선진출팀 컨설팅
 - 대상 : 본선진출 팀 사업제안서 ※ 일정은 팀별 조율
 - 내용 : 계획 보완 및 사업비 조정 등 제안서 수정·보완 등
 - 방법 : 팀별 컨설팅단 매칭 후 사업제안서 컨설팅
 - ※ 컨설팅 완료 후 최종 제안서로 본선 진출·심사
- 본선(제안대회)
 - 대 상 : 본선 진출팀 10팀 내외
 - 심사방법 : 심사위원(50%)+청소년 청중평가단(50%)
 - 심사위원 구성 : 청소년 전문가 및 예산부서 공무원 등 5인 내외
 - 심사기준 : 공익성, 내용의 충실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발표력 등
 - 발표형식 : 파워포인트, 상황극, 판넬 등 다양한 형태 가능

5) 청소년 청중평가단 모집

- 역 할 : 제3회 경남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심사
- 대 상 : 경남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100명
 - ※ 경남 청소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거나 경남 소재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budget/>)를 통한 접수[사업제안]-[청소년 제안대회]-[청중평가단 신청]
- 선발방식 : 선착순 ※ 단, 제안대회 신청자는 중복 접수 불가
- 참가혜택 : 청소년 청중평가단 활동시간 봉사시간 인정
 - e-청소년 (<http://www.youth.go.kr>) 회원가입(자원봉사시간인정) 필수

참고

제3회 경남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제안서

제안제목	
분야	☐ 청소년 ☐ 지역사회 (관련된 영역에 v표시)
제안내용 요약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 참고사항 > - 우리 주변의 불편사항, 지역사회 문제점, 개선되길 바라는 점을 찾아본다. - 제안하는 주제와 관련된 현황(경남, 해당지역, 학교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시행되고 있다면 문제점·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 수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제안사업의 개요	
○ 소요예산 : 0000원(금--원) ○ 사업대상(수혜자)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사업비 산출내역)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 참고사항 > - 제시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다. (기간, 대상, 인원,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금액 등) -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실현가능한 제안내용인지 생각해본다. - 제안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실행방안에 대해 작성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대효과	
< 참고사항 > - 제안하는 사업을 실행하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제안하는 사업이 사업대상 또는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기타자료	

청소년 제안대회 수상작

■ 태우소 (버스정류장 태양광LED 및 탑승시스템 설치)

1. 참가팀 : 창원시진해청소년참여위원회 '꽃비'

2. 제안취지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꽃비위원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논의하던 중 '웅천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어두워져서 버스정류장을 찾기 힘들었다.', '정류장에 서 있어도 버스가 그냥 지나간다.'라는 팀원들의 말에서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한 번쯤은 무정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캄캄한 밤에는 교통사고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창원시 내에는 2019년 기준 총 2,187개(개방형 379개, 박스형 947개, 폴형 861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다.

- 약 40%에 달하는 861개 폴형은 특히 버스정보시스템,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 개방형이나 박스형 정류장에도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님 이는 교외 지역으로 나갈수록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창원시 통계자료 참조)

2) 문제점

버스정류장을 한 번에 모두 완벽하게 설치하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든다. 시에서 조금씩 설치가 되어가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생각해보았다.

- 야간에 버스 정류장이 어두워 승객 미확인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있음

(야간 막차의 놓치게 된 경우엔 귀가에 어려움이 발생함)

- 폴형 버스정류장 경우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승객이 버스기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이 도로변으로 나가있게 됨
-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버스를 잡기 위해서 도로변까지 나오는 경우 (야간에는 폰을 켜고 흔들어야함) 안전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초등학생이나 노약자의 경우는 버스를 기다리려 서있는 것 자체가 위험)
- 모든 버스정류장을 박스형/개방형정류장으로 교체하기에는 예산상 한계

3. 사업개요

1) 소요예산(원) : 300,000,000원(금삼억원) ※ 실제 반영액 : 1억원

2) 사업대상 (수혜자) : 창원시민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

4) 사업기간 : 2021. 2. ~ 12.

5) 사업비 산출 내역 :

- 태양광 조명 설치 : $1,500,000\text{원} \times 100\text{개} = 150,000,000\text{원}$
(학교 앞 및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설치, 예산범위 내 추가설치 가능)
- 탑승시스템 설치 : $300,000\text{원} \times 500\text{개} = 150,000,000\text{원}$
(조명종류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1) 버스정류장 야간 조명 설치 : 태양광LED 설치

- Pole형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은 가로등(보안등)처럼 태양광 LED 설치가능
- 조명이 필요하지만 전기사용이 어려운 버스정류장에도 설치가능
- 필름형 모듈을 사용해 낮에 에너지를 축적한 뒤 밤에 사용
- 학교 앞 또는 청소년과 주민들이 평소에 사용이 잦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 가로수와 불법주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 도로로 나가서 버스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승차하게 됨



(진해지역 청소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버스정류장 예시)



(참고사진 :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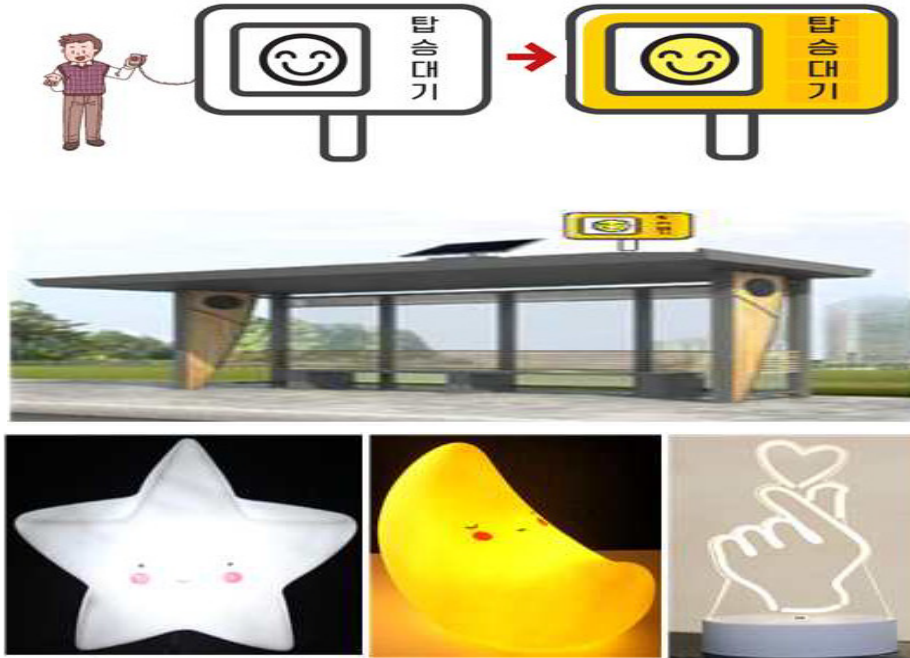
(1) 설치 시 장점

- 학교 앞 및 도서관 등 야간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고, 야간자율학습 등 늦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함
-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대중교통이용 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어두운 지역에서는 방범보안등의 역할도 가능함
- 별도의 전기요금이 없어 경제적이고 형광등보다 밝음
- 감지센서를 통해 조명의 사용량을 조절하여 에너지 낭비를 예방
- 일반조명보다 설치방법이 간편함
- 무정차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탑승과 하차가 가능함
(예, 야간에 어르신들이 내릴 때 바닥이나 주변 확인이 가능)

2) 탑승시스템(표시조명or표지판)설치

-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할 차량이 올 때 버튼을 눌러 멀리서 기사님이 쉽게 보시고 정차할 수 있도록 조명표시판을 설치함

- 색깔이 있는 조명을 활용한다면 낮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됨
- 조명의 사이즈 및 형태, 모양은 다양하게 고려가능



(참고사진 :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1) 설치 시 장점

- 버스의 무정차 방지를 통한 승차객의 만족도 증가
- 사용 방법이 편리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승객이 쉽게 이용 가능함
- 야간 버스이용 시 안전한 정차로 승차객의 안전을 확보함
- 버스기사님께서도 쉽게 승차객을 확인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야간조명은 버스기사님께서 승객을 잘 볼 수 있어서 무정차 통과 예방
- 태양광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됨
- 승객들의 버스 이용 만족감 상승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 증가
- 버스정류장에 조명과 탑승시스템이 있으면 시민들이 도로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어 안전을 지킬 수 있음
- 버스기사님께서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분가능
- 탑승알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의 버스승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가능
- 탑승알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의 버스승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가능

■ 학교 밖 청소년 꿈빛카드(자기계발 바우처 카드) 지원

1. 참가팀 : 가온(세상의 중심)

2. 제안취지 (현황 및 문제점)

1) 경제적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비행과 학업 중단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2018)

표 IV-12. 지역별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경제적 어려움 •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동 증가 • 가정의 구조적 기능 문제(이혼가정,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 경제적 어려움 • 슬럼지역 내 집단행동 증가	• 경제적 어려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 무기력 및 생활태도 불규칙 • 부모의 무관심

2) 사회적 제도의 차이

- 학교 안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제도 및 정책은 너무나 미약하다.
-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제도에서 밀려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청소년기에 진로 방향성을 잡는데 중요한 진로 체험 및 직업 인지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인가 대안 학교 학생들에게는 접근 방식이 쉽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017)

3)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욕구

- (1)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욕구로 학업/진학 영역에서는 검정고시 준비와 진학 정보제공이 가장 높으며, 진로/직업 영역에서는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이 여가

활동영역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욕구가 가장 높다.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2018)

- (2)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욕구 및 어려움으로는 진학 준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비나 생활 곤란으로 나타났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연구, 2019)

4)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인지하는 진로

- (1)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장벽이 높고, 진로 자기 결정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 (2) 추가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장벽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2019)

3. 유사 정책 시행 현황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남시에 1년 이상 등록되고 있는 16 - 18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사업)

4. 사업개요

- 1) 소요예산(원) : 300,000,000원(금삼억원)
- 2) 사업대상 (수혜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상남도에 1년 이상 등록된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포함) 560명
-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 4)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5) 사업비 산출 내역

- 정책 시행비 20,000천원
- ※ 홈페이지 제작비용, 사후서비스
- 꿈빛 카드 지급 비용 280,000천원

5. 사업내용

1) 주요 사업 내용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경상남도에 1년이상 등록되어있는 만16 - 18세 학교 밖 청소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포함) 560명을 대상으로 꿈빛카드(경남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를 지급한다.

2) 사업 계획

(1) 꿈빛 카드 신청 방법

- 모집 기간 및 인원

- 모집 기간 : 1차, 2021년 1월 (시행 2월 - 종료 4월, 3개월)
2차, 2021년 4월 (시행 5월 - 종료 8월, 4개월)
3차, 2021년 8월 (시행 9월 - 종료 11월, 3개월)
- 모집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경상남도에 1년 이상 등록되어있는 만16 - 18세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 모집 인원 : 560명

- 신청 장소 및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꿈빛 카드 사업 관련 신청 주소
- 신청 방법 : 온라인 개별 접수 (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 :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증명서 등
- 주의 사항 :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 1차 신청자 -> 2차 신청 -> 3차 신청 가능

(2) 꿈빛 카드의 지급 및 사용

- 꿈빛 카드의 지급 장소로는 경상남도 내 각 시군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꿈빛 카드는 경남사랑상품권(제로 페이)로 지급되며 3분기

마다 신청을 해야 하며, 매월 10일 지급된다. (월 1회 지급 금액 5만 원, 동일 분기 내에서는 이월이 가능하다.)

※ 주의사항

- ①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꿈빛 카드는 매월 1일 사용처를 조사하며, 부적절한 사용처에서 사용기록이 있을 시 즉시 지급을 중단한다.
 - ③ 지급이 중단된 대상자의 잔여액은 즉시 회수한다.
 - ④ 지급받은 카드의 금액은 분기 내의 경우 금액의 이월된다.
 - ⑤ 상품권과 같은 경우, 상품권 자체의 사용기한을 적어놓거나 기한이 지났을 시 코드번호를 차단시키도록 한다.
- 꿈빛 카드의 사용처는 경남사랑상품권과 협력된 병원 또는 약국, 진로와 관련된 체험기관과 탐색기관, 학업과 관련된 서점 또는 학원, 여가와 관련된 스포츠이용 시설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프로그램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 숨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용이하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문제 및 사회적 적응성을 기르게 하여 비행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낮춰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용인교육대학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기 효능감을 줄 수 있다.
- 진로와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성숙도를 높여 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모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사회적 제도 차이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

도민예산학교가 운영 돼요!

참여예산제도 및 경상남도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통해 도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경남도민 누구나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생 모집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http://www.gyeongnam.go.kr/budget/>)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및 정책의 이해, 주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등
- 운영과정 : 2개 예산학교 운영(도민·예산위원 4회, 주민자치회 6회, 기관단체 10회)

구 분	대 상	교육일시	비 고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 (3시간)	도민·예산위원 (30명/회)	시·군 및 주민자치회 희망시간	
	주민자치회 (30명/회)		
기관·단체 맞춤형 예산학교 (3시간)	도내 기관·단체 (30명/회)	기관·단체 희망시간	

1)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일반도민)

- 추진목적 : 도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 교육
- 교육대상 : 도민, 예산위원
- 교육인원 : 30명(선착순 모집)
- 교육내용 :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주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등

2)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주민자치회)

- 추진목적 :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로 자치분권 활성화
- 교육인원 : 30명(선착순 모집)
- 교육대상 : 주민자치회 위원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 정책의 이해, 주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등

3) 기관·단체 맞춤형 예산학교

- 추진목적 : 특정대상별(여성, 장애인 등) 및 도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별(농업, 환경 등) 맞춤형 특화 교육 기획 및 운영
 - ※ 예산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 교육인원 : 30명(선착순 모집)
- 장 소 : 회의실, 공공시설 등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내용 : 영역별 개념 공유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주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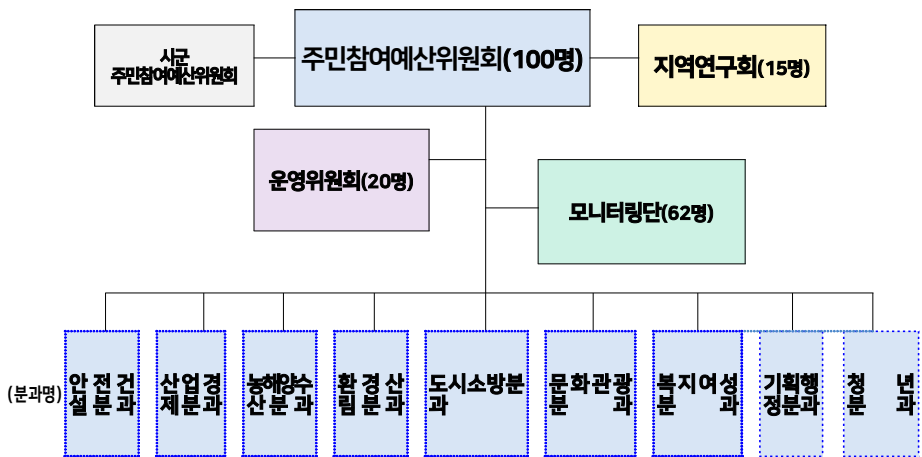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제안사업을 심의, 조정, 의결 및 경상남도 주요재정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위원회 구성

1)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수 : 100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배분
- 위원 해촉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직도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해요!

2) 위원회 기능

-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 분과위원회, 지역연구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 기타 안건 심의
-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등

3) 경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100명으로 구성된 총회와 9개 분과, 운영위원회, 기능분과(홍보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총회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상남도지사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결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운영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도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 도의회 예산심의권 침해금지 및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범위내 활동

○ 분과위원회

구성	· 총100명 이내 · 9개 분과 : 안전건설, 산업경제, 농해양수산, 환경산림, 도시소방, 문화관광, 복지여성, 기획행정, 청년분과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분야별 현 실태 의견개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참여예산사업 현장방문·확인 및 참여예산사업 사업점검

운영	· 사업타당성 검토 등
-----------	--------------

○ 운영위원회

구성	- 총20명 ·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부위원장
심의사항	-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최종 의견서 작성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등
운영	· 투표대상사업 최종선정

○ 홍보TF분과

구성	총 10명 ※ 분과별 1~2명
기능	- 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수집 -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 홍보 활동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해요!

1) 신청사업 모니터링

참여예산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접수된 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의 하나로 참여예산위원이 직접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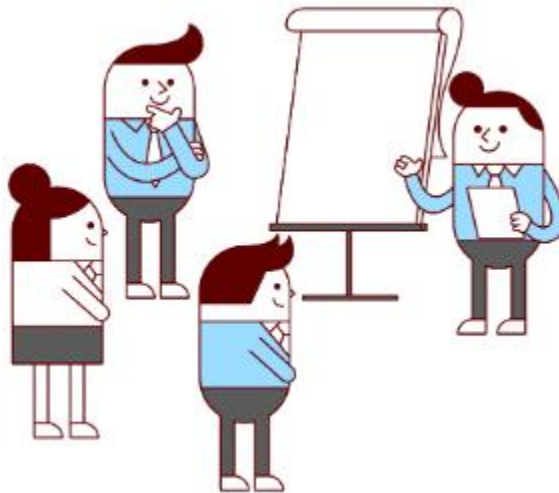
- 추진시기 : 연도별 상반기
- 대상사업 : 위원회 사업심사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모니터링단 구성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점검방법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현장의 일치성,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 사업 필요성 현장심사
-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실시 후 각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등록
- 결과보고서 등록방법
 - 참여예산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udget/) 접속 → 참여예산위원회 → 사업모니터링 → 신청사업 모니터링 → 로그인(성명, 생년월일 입력) → 현장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2) 선정사업 모니터링

참여예산사업이 제안된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인 없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등 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참여예산위원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추진시기 : 연도별 하반기
- 대상사업 : 선정되어 추진 중인 참여예산사업
- 모니터링단 구성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참여예산 지역연구회원
- 점검방법
 - 서면심사 : 사업제안서, 사업 관리카드 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전반 점검

- 현장심사 : 서면심사 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현장방문
-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실시 후 각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등록
- 결과보고서 등록방법
 - 참여예산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udget/) 접속 → 참여예산위원회 → 선정사업모니터링 → 로그인(성명, 생년월일 입력) → 결과보고서 작성



참고

모니터링 주요 체크포인트

연번	모니터링 평가지표	체크포인트
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마무리) 되었습니까? (사업 착수여부, 공정률 등)	-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확인, 연도 내 사업완료 가능여부 등 -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서와 비교하여 공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사유 확인 필요
2	제안의도를 반영하여 진행되었습니까?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	- 당초 주민제안내용과 사업위치 및 사업내용이 동일하지 여부 확인 - 위치, 내용이 변경되거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업내용(대상지)을 추가하는 사례는 원칙적 불가(사유확인 필요)
3	주변에 불편이나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사업 추진과정에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연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 검토
4	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 특정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 또는 주민수혜도가 한정된 사업인지 검토 * 단,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등 소수자 배려를 위한 사업은 주민 수혜도가 한정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
5	절차가 중복되거나 예산낭비 요소는 없습니까? (사업비 과다 산정, 관련기관 협의미비로 일부공정 중복 시행 등)	- 불필요한 공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나 일부공정 축소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등 검토 * 사실상 세부적인 산출내역, 품목별 단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모니터링은 행정감사가 아님을 유의
6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 달성 여부 검토 - 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 사업실시 전후의 긍정적 변화 예측 검토
7	해당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또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 향후 다른 지역과 시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또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위원 종합의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 이외에 사업추진 방법의 효율성 등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참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서면)

사업명			
분과명		평가위원	(서명)

<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척도	적정	부적정
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까? (사업 착수 여부, 공정률 등) ※ 정상 착수 되었거나 착수 예정일 경우 적정 의견:		
2	사업계획은 사업제한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습니까?(사업위치, 사업내용 등) ※ 무리없이 계획이 작성되었을 경우 적정 의견:		
3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까? ※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포함하여 적정 의견:		
4	해당사업은 다수 주민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각지대 발생 요인이 없을 시 적정 의견:		
5	절차 및 공정이 중복되거나, 사업비 산출내역에 예산낭비 요소는 없습니까? (과다산정 등) ※ 적절한 산출내역이라 판단될 경우 적정 의견:		
6	해당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적·양적 성과, 사업실시 전후의 긍정적 변화 등)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의견:		
7	해당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또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 지속성이 충분할 경우 적정 의견:		
	<종합의견>		우수사업여부

참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현장확인)

팀명	○팀 (○○분과, ○○분과)	사업위치	
방문일시	'○○년 ○○월 ○○일	소요예산	천원
참가위원	실제 참가위원 성명 모두 기재		
사업명			

< 모니터링 결과 >

항목	모니터링 내용
1	사업의 효과성 해당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적·양적 성과, 지역 활성화, 사업실시 전후의 변화 등) 의견: (위원별 의견 제시 가능) ○○○위원 : ○○○위원 :
2	수혜범위 해당사업은 다수 주민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위원별 의견 제시 가능) ○○○위원 : ○○○위원 :
3	민원발생 가능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까? 의견: (위원별 의견 제시 가능) ○○○위원 : ○○○위원 :
4	사업의 적정성(규모 및 사업비) 절차 및 공정 이중복되거나, 사업비 산출내역에 예산낭비 요소는 없습니까? (과다산 정 등) 의견: (위원별 의견 제시 가능) ○○○위원 : ○○○위원 :
5	주민의견 수렴 사업발굴 시 지역회의, 사업진행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의견: (위원별 의견 제시 가능) ○○○위원 : ○○○위원 :
의견:	종합의견 :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필요성 여부 등 종합적 판단)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낭비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알뜰한 경상남도 살림살이의 파수꾼입니다.
생활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신고대상

- 예산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또는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접수 (1577-1242)
-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활용)
- 우편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

○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 인원 : 51명(무보수 명예직 봉사성격)
- 임기 : 2018. 12. 6. ~ 2021. 12. 5.
- 주요활동 :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등

○ 문의 :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

■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budget/>)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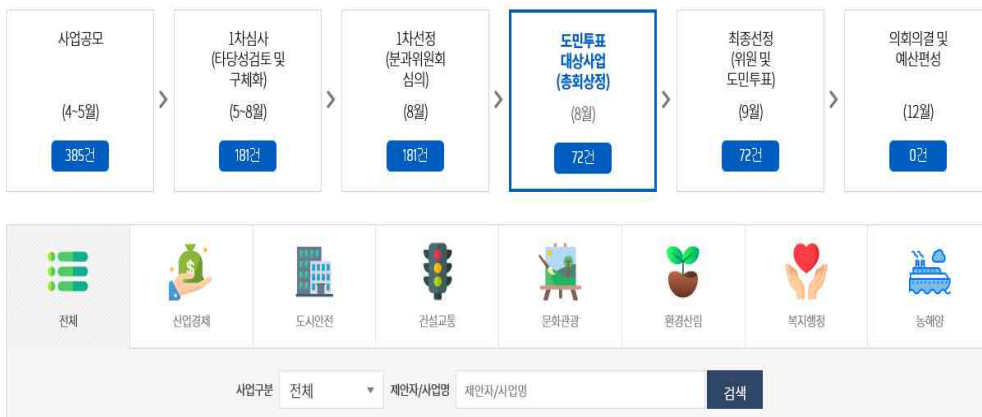
○ 사업 제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진행상황

제안한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예산 제안사업 및 심사결과(2021년 사업 시행)



○ 예산학교 신청

참여예산제도 및 경상남도 예산에 대한 교육을 통해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민예산학교



예산학교

참여예산제도 및 경상남도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통해 도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신청

나의 교육신청내역 및 이수실적

<QR코드>



■ PC나 휴대폰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바로 제안하세요.



2021 경남도민 예산학교

'예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여가 만드는 일상의 행복 주민참여예산

1. '재정'과 예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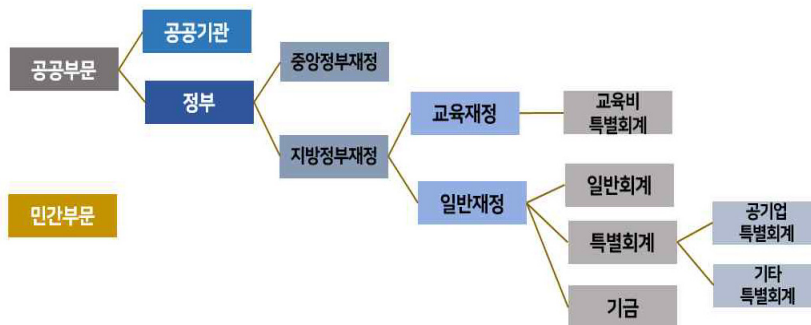
우리가 참여예산 과정에 함께하기 위해 예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 자세만 갖추고 있다면, 예산에 대해 잘 몰라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주제로 주민들끼리, 또는 공무원과 같이 토론을 할 때 주민 여러분이 기본적인 예산 체계와 절차, 주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는 정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틀에서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재정'과 예산, 그 말이 그 말인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범주가 다른 말입니다.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은 예산보다 큰 개념입니다. 재정은 정부가 공공수요 충족을 위하여 자원을 획득,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총체적 경제활동(조세, 분배, 지출, 공채, 회계·예산 등)을 말합니다. 예산은 재정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재정의 하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예산(豫算, Budget)은 '숫자(액수)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계획서'입니다.

일정기간(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세입예산), 조달된 돈을 여러 사업에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세출예산)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재정과 예산의 체계>

8)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2. 지방예산의 3대 기능⁹⁾

- 재정계획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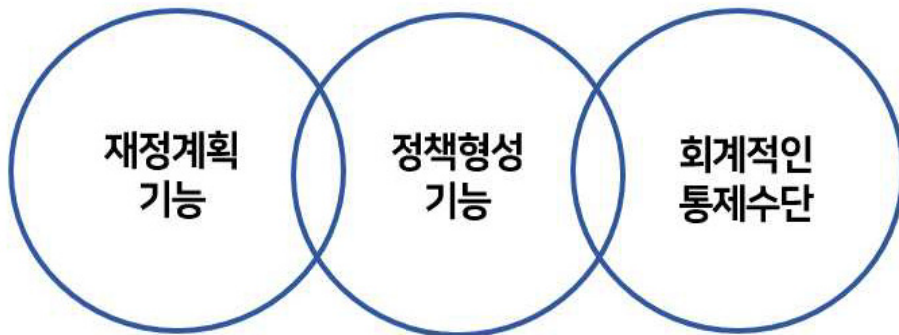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자원 조달 전망을 명확히 한 계획

- 정책형성 기능

한정된 재원을 주민들의 필요에 근거해 각종 사업시책의 적절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예정되어 있는 시책의 일람

- 회계적인 통제수단

예산의 의결에 의해 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과 함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게 됨



9)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3. 예산의 원칙과 기간¹⁰⁾

1) 예산의 운영의 일반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익년도에 이월사용 금지 · 예외 :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지출, 지출·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예산총계주의 원칙	· 제반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 제반지출은 세출에 편성 운영 · 예산편성의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 예외 : 일시차입금, 현물출자, 공익상 자산보유, 기금의 설치·운용, 세계잉여금의 채무원리금 상환, 세입·세출외 현금
건전재정운용 원칙	· 수지균형의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부당한 영향 금지 원칙 · 예외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이를 사용 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사업 간에 상호 이용 할 수 없음 · 예외 : 이용, 전용, 이체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도) 또는 10일전(시·군) 까지 예산안 의결 · 예외 : 준예산제도, 예비비 등
예산 공개의 원칙	· 예산의결 내용의 고시, 결산결과의 고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2) 예산의 기간

- 계획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을 기간은 ‘회계연도’라 함.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10)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4. 세입과 세출과 지방 세입구조¹¹⁾

세입은 ‘모든 수입’, 세출은 ‘모든 지출’을 뜻합니다. 세입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모든 (현금적) 수입, 세출예산은 모든 지출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입재원은 조세수입[세입(歲入)]이지만, 그밖에도 다양한 세외수입(世外收入)과 공채(채무) 등의 재원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지방예산에서는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재원’외에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의존재원’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지방예산 세입구조가 복잡해집니다.

■ 지방세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함. 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와 광역시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와 광역시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과세권 배분에 큰 차이가 있음. 전체 지방세목은 11개인데, 도에서는 도세 6개, 시·군세 5개로 과세권을 가지 세목 수가 비슷한 데 비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세가 9개이고, 자치구세는 2개(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불과함.

■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칭해 세외수입이라 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눔.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 조달되어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 수입으로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 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내부적인 단순한 재원이전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 있음.

11)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구분		시·도	시·군	자치구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채무		지방채		
의존재원	중앙	지방교부세		
	▼			
	지방	국고보조금		
	광역		조정교부금	
	▼			
기초		시·도비보조금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 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여 교부액을 확정하며,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함.

■ 조정교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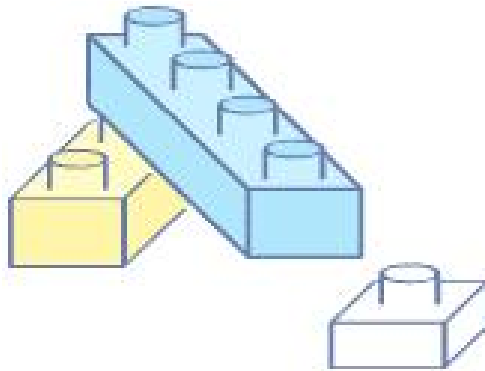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률로 정하며,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국고보조금(시·도비 보조금도 성격이 유사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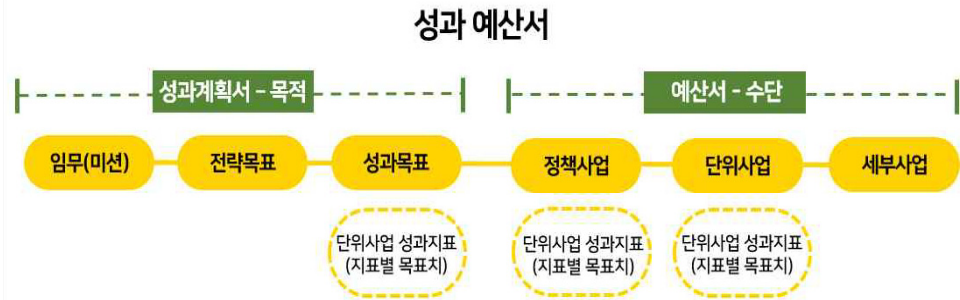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있으며,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공시설 설치, ② 당해 사업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 ⑤ 기 발행한 지방채 차완, ⑥ 그 밖에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한 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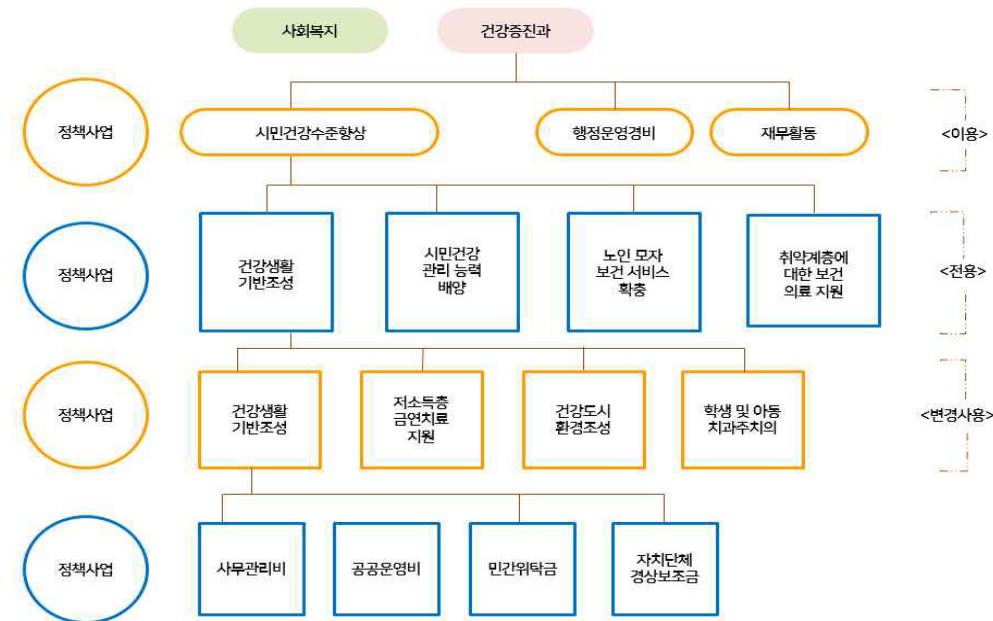
5. 세출예산 구성체계 및 성질별·기능별 분류¹²⁾

■ 사업구조



-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가능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 세출예산 구조 예시



12)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8개)	편성목(38개)(통계목 138개)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보수, 02기타직보수, 03무기계약직보수, 04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01사무관리비, 02공공운영비, 03행사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205 의회비, 206 재료비, 207 연구개발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303 포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305 배상금등, 306 출연금, 307 민간이전, 308 자치단체등이전, 309 전출금, 310 국외 이전, 311 차입금 이자상환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 단체등 자본이전,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 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502 출자금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원금상환, 602 예치금
700 내부거래	701 기타외계등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육비특 별회계전출금, 704 예탁금, 705 예수금 원리금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 목그룹 - 유사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
(100 인건비, 200 물건비, 300 경상이전…)
- 편성목 -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 각 목그룹을 세분화한 것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 통계목 - 통계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해 각 편성목을 세분화한 것
(202 여비⇒ 202-01 국내여비, 202-02 월액여비, 202-03 국외업무여비…)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2개 부문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분야	부문	명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소(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 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 금융		073	대기		113	무역및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 고동화
020		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25	재난방재 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및초등교육		084	보육 가족및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 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060		문화및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및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 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 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 여촌		161	예비비

6. 예산주기(週期) 및 성립시기별 분류¹³⁾

■ 예산의 전 과정은 3년에 걸쳐있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예산			중기재정기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심의	예산집행
2020년 예산		중기재정기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심의	예산집행	결산
2019년 예산	중기재정기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심의	예산집행	결산	

■ 성립시기별 분류

본예산	· 연간예산으로 맨 처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
수정예산	·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
성립 전 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추가경정 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13)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7. 예산편성과 계산방법별 분류

■ 예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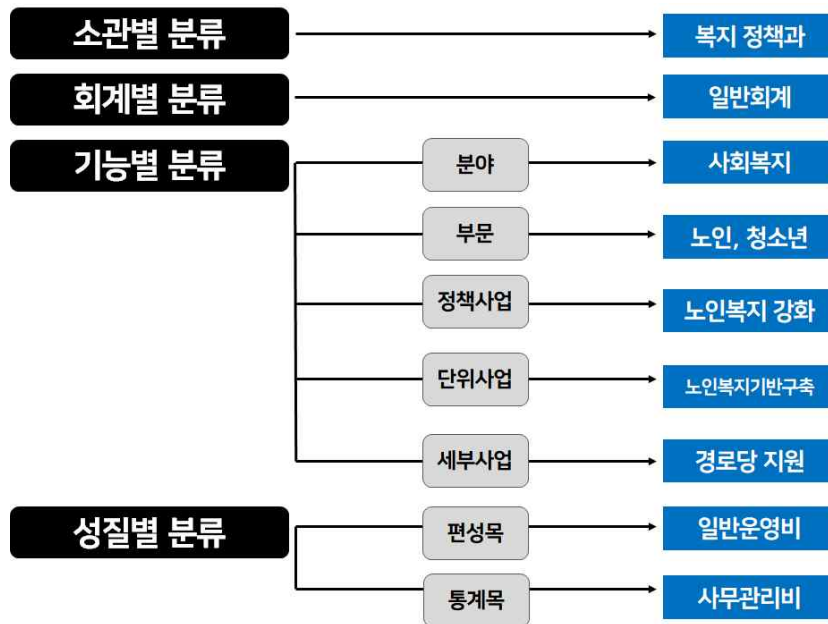
- 예산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

■ 예산편성 및 심의일정

1~6월	신규사업 발굴 및 선행절차 이행
	↓
5~6월	예산편성 관련 각계의 의견 수렴
	↓
6~7월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 시달
	↓
7~11월	예산(안) 편성
	↓
11월11일까지(시군11.21)	예산(안) 의회 제출
	↓
12월16일까지(시군12.21)	지방의회 심의·의결

■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SOC사업, 사회복지사업, 농수산사업 등)
- 세출예산의 분류



■ 예산편성¹⁴⁾

• 총계(總計)예산

외형적 예산규모를 나타낼 때 주로 쓰임.

자치단체나 회계별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 예산규모를 말함.

• 순계(純計)예산

총계예산에는 내부거래(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자치단체간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중복분을 차감한 예산규모를 순계예산이라 함.

14)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8. 지방재정의 모든 것¹⁵⁾

1) 지방재정지표

-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재원에 더하여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교부세 등)을 합산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당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량지출능력을 나타냄.

-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서, 수입액이 수요액과 같으면 1로 표시. 필수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지출능력을 알 수 있음.



15) 2020 서울시예산학교 기본교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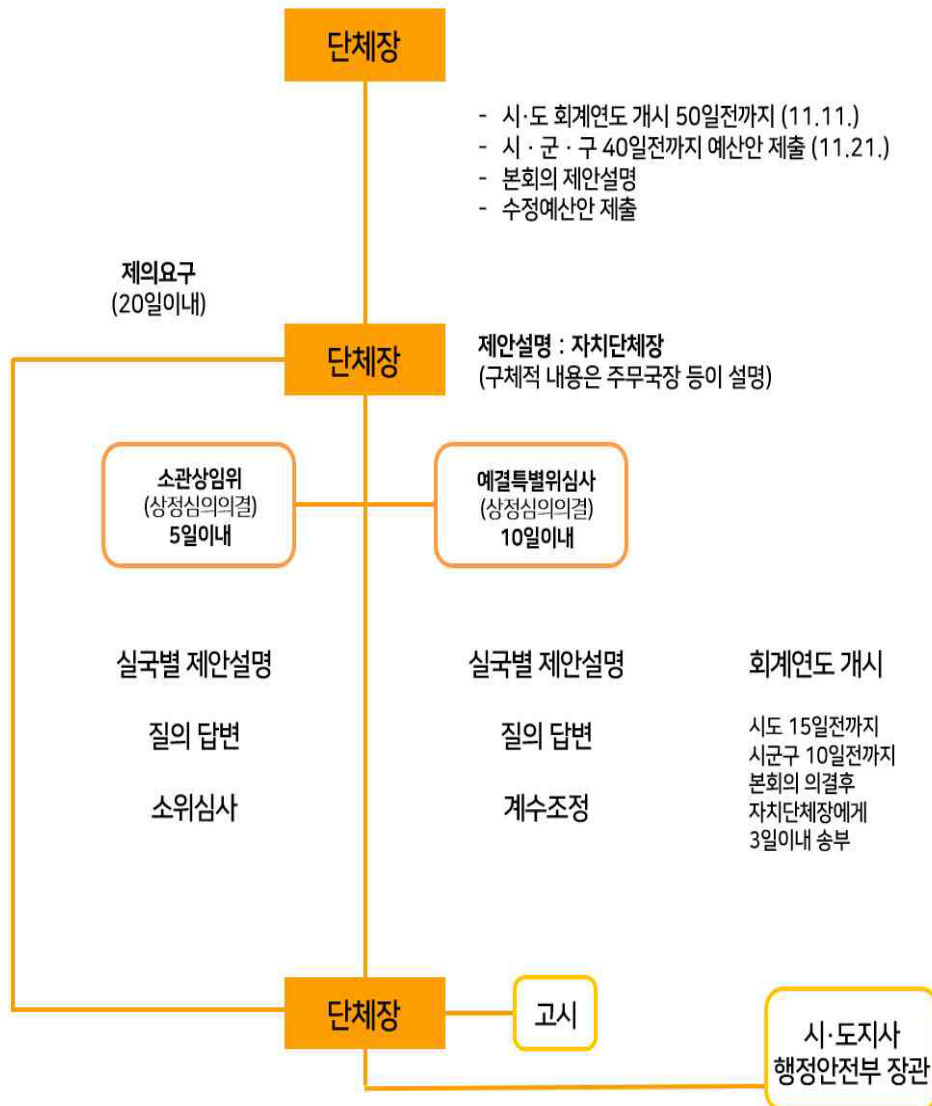
2) 지방예산 운영절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전 계획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 - 상반기에 작성하여 하반기에 행안부 보고
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으로 투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등)계획의 의결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편성·운영기준 시달 (지방재정법 제38조)	- 지방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제정 - 전년도 7월 31일까지 시달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요구 방침설정

예산 편성 시·도:11.11일까지 시·군·구:11.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지방교부세	-내시(전년도 10.15까지)
	국고보조금	-내시(전년도 10.15까지)
	지방채발행승인	-승인(전년도 10월말)
예산 의결 시·도:12.16일까지 시·군·구:12.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행정안전부에 보고(시·도)	
	단체장에게 3일 이내 의결예산 이송	
결산승인 결산서 작성:다음연도 3.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34조) 의회제출:다음연도 5월말까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행정안전부에 보고(시·도) -지방재정분석·진단 활용	

2) 지방예산 심의절차도



3) 지방재정 공시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게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기공시는 매년 2월(당해연도 예산 기준)과 8월(전년도 결산기준)이며, 수시공시도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통합공시는 행안부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s.go.kr/>), 각 지자체 자체공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

■ (당해연도) 예산기준 공시항목 매년 2월

분류	세부항목	
예산규모 (3)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운용계획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 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재정운용성과 (4)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전년도) 결산 기준 공시항목 매년 8월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4)	·세입예산·세출예산·기금운영현황·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3)	·재정자립도[결산]·재정자주도[결산]·통합재정수지[결산]	
부채/채무/ 채권(11)	·통합부채 현황·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인건비 집행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외여비 집행 현황	·지방의회 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연말지출 비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3)	·지방세 징수 실적·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복지/민간 지원(6)	·사회복지비·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행사 축제경비
재산물품/ 공공기관(4)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 평가(14)	·성과보고서·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 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투자사업 추진현황(3)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1)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선정(5건 이상)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변화된 경남



참여가 만드는 일상의 행복 주민참여예산

2019년 사례

주민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가치 세대 공감 남곡문화장터 조성사업

1) 자치단체명 : 창녕군

2) 제안자 : 창녕군 남지읍

3) 사업명 : 세대공감 남곡문화장터 조성사업

4) 사업비/기간 : 50백만원 / '19. 6월 ~ '19. 12월

5) 사업효과

세대 공감 문화장터를 개장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배움의 기회와 문화혜택을 적극 제공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재생의 중심지 마련

6) 우수사례 내용

○ 사업 추진배경

- 남곡주민자치센터는 읍내에서 20km 떨어진 농촌지역으로 16개 마을이 참여·운영하며 주민 소원에 따라 폐교된 남곡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주민센터를 개설하였고 문화·교육·복지시설 제로지역에서 유일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음
- 문화,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조손가정 아동에게 도서실 개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1971년)되었고 물리치료실과 동시사용하고 있으며, 책상과 학습자재가 없어서 방학과 방과 후 아동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이 절실한 실정임
- 노인인구가 44%인 남곡지역은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으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어 이웃주민과 어울리며 세대공감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없음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조손가정 아동이 노후된 물리치료실과 동시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보수하여 ‘남곡 신나는 어린이 교실’을 마련하고자 함
 - 노인인구 44%,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공감할 휴게공간으로 ‘남곡문화사랑방’과 지역사회 정보제공을 위한 ‘남곡 추억 공감방’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남곡문화사랑방: 남곡 지역 주민들이 모여 프로그램 이용 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노인과 아동이 동일공간에서 학습하며 세대 공감하는 복합 휴게 공간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확대
 - 남곡주민자치센터 내 교실 활용하여 휴게 공간 마련
 - 내부 리모델링(벽면도배 및 바닥재 교체) 공사
 - 소파 및 테이블, 책장, 도서구입, TV(1대) 및 냉온풍기(1대) 설치
- 남곡 신나는 어린이 교실: 남곡 지역 16개 마을 거주 다문화가정·조손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제공
 - 센터 내 물리치료실과 문고 공간 활용(1칸) 어린이문고 및 학습공간마련
 - 내부 리모델링(벽면도배 및 바닥재 교체) 공사
 - 책상·의자·책장·도서구입 비치
 - 어린이전용 학습용 컴퓨터(5대), 프린터기 구입 설치, 냉온풍기 설치
- 남곡 추억 공감방: 1944년 개교한 남곡초등학교 유류품 전시 공간 마련, 지역의 교육·역사적 자료와 정보를 정리, 보존하고 지역사회 정보 제공
 - 전시용 책장 10개 구입
 - 안내판(지역자료 정리 게시용) 제작

○ 효과

- 남곡 지역 세대 공감 문화장터 개장으로 주민들이 모여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정보와 영농정보 교류의 장이 상설 제공됨
- 폐교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 농촌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적극 제공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전용공간 개설로 사회통합의 기회마련과 학습공동체가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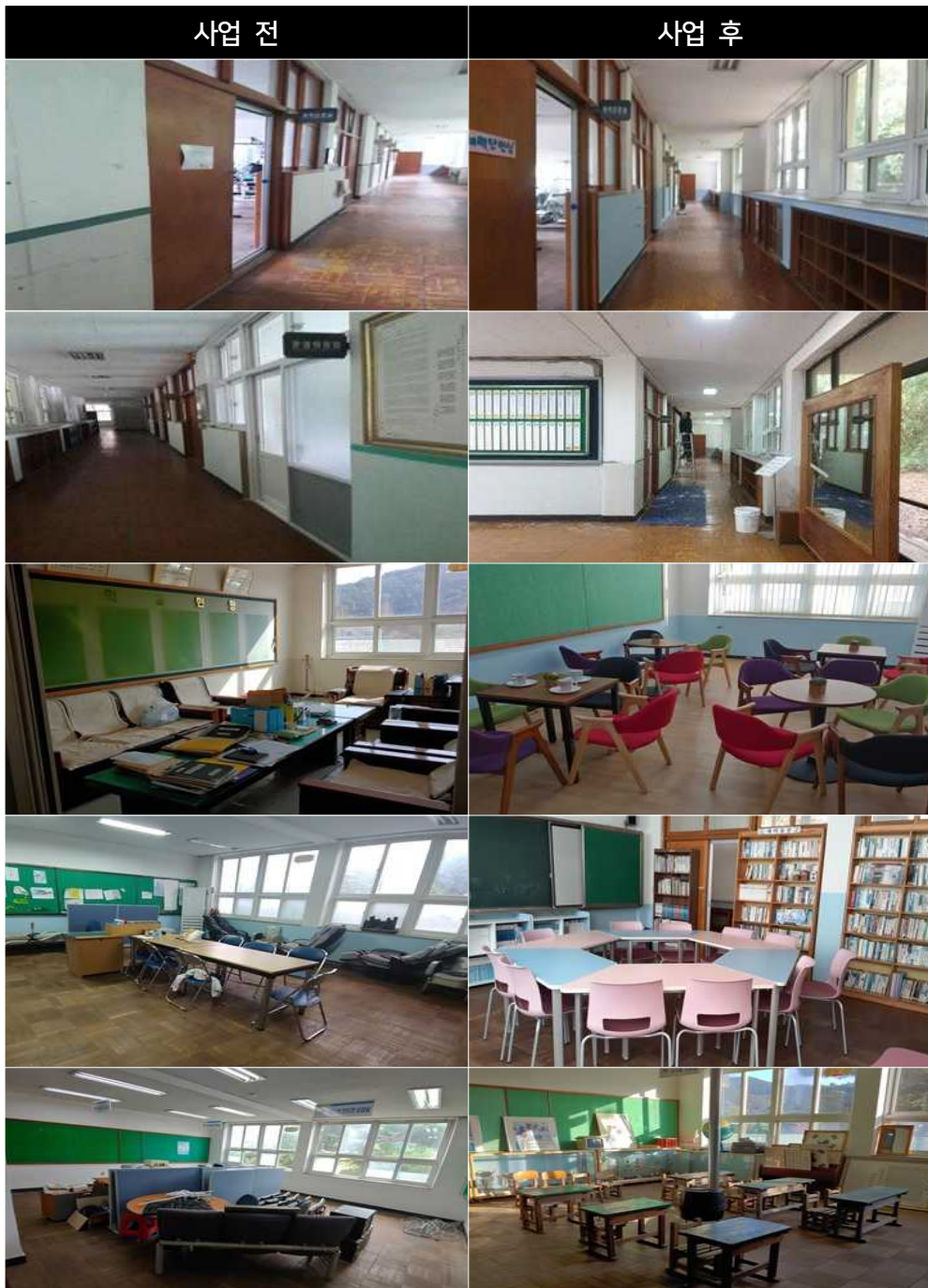
- 교육·역사적 자료와 정보를 보존하며, 귀향귀촌·귀농인에게 마을의 유래를 알리고 농촌의 문화에 대한 가치인식과 세대 간 전승함

○ 추진과정

- 세대공감 남곡문화장터 조성사업 추진 회의개최: 7회
(2019. 4. 15, 5. 15, 7. 15, 8. 16, 9. 16, 11. 19, 12. 16)
- 관내·외 유사시설 현장 견학 실시: 4개소
※ 창녕군 성산면 성곡정보화마을, 남지도서관, 남지청소년문화의집, 세종시부강면
-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반영한 설계서 완성 및 계약완료 : 2019. 8월
- 내·외부 공사 완공 : 2019. 9월
- 사무기기 디자인 결정투표 실시 및 구입 : 2019. 10월~11월
- 2019년 지역주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성과보고 : 2019. 12. 16.



○ 사진



하대현대아파트 작은도서관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1) 자치단체명 : 진주시

2) 제안자 : 진주시 하대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감사

3) 사업명 : 2019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4) 사업비/기간 : 100백만원 / '19.4월 ~ '19.12월

5) 사업효과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 후 작은 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이웃과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젊은 가정에서 육아와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아파트 마을이 함께 키우며 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었음

6) 우수사례 내용

○ 생각과 문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진정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 24년 된 1,108세대 아파트에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용의 공간이 없었으며, 좁은 부지로 놀이터마저 주차공간으로 되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음.
- 동 대표 회의실 및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여 생각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아파트 공동체 운영을 위한 '도민주도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응모 선정
- 사업 시행 후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인 퇴임한 유·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재능 봉사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및 교육의 부담 경감 등 주민 간 신뢰의 관계망 구축,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경상남도 「2019 아파트공동체의 날 우수사례」 대상 수상

○ 사진

사업 전	사업 후
	
동대표 회의실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리모델링 공사 및 도서구입)
	
커뮤니티&도서관 천정 목공 및 전기작업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

뽕송뽕송한 이불빨래로 전하는 이웃사랑

1) 자치단체명 : 경상남도 거창군

2) 제안자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3) 사업명 : 위천면 사랑나눔 빨래방 설치·운영

4) 사업목적

사용하지 않는 구 소방서 건물을 빨래방으로 리모델링하여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으로 청결한 생활여건 조성

5) 사업추진 현황

- 예산 : 77백만원(도비50, 군비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부담2)
- 장소 : 위천면 원학길 321-23
- 기간 : 빨래방 설치 2019. 5. ~ 11.
빨래방 운영 : 2019. 12. ~ 계속
- 내용 : 빨래방 리모델링, 대형 세탁기·건조기 각 1대 설치 등

6) 빨래방 운영현황

- 운영기간 : 연중 / 월~금요일 09:00~18:00
- 이용대상 :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세탁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담인력(자활사업참여자) 1명 배치
- 마을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등이 가구별 대형빨래 수거·배달
- 운영실적 : 220가구 550채 세탁서비스 제공('19.12.~'20.3.까지)

7) 사업효과

- 주민들이 마을 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빨래를 수거하고 안부확인을 하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어르신들은 이불세탁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하고 깨끗하게 건조된 세탁물을 배달까지 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음
-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생활지원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빨래 뿐 아니라 취약계층 안부확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등과 연계하여 위천마을복지 모델 사업으로 추진 중임.

8) 우수사례

○ 어려운 이웃 새 이불 지원

- 이불제조업체(대구 아림침장)에 위천면 사랑나눔빨래방 사업을 홍보하여 이불 35채 후원
- 세탁서비스 제공 시 오래되어 헤진 이불을 사용하는 35세대에 새 이불 전달

○ 설 명절 맞이 독거노인 가구 이불세탁 서비스

-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 이불을 마을이장이 수거하여 설 명절 전 세탁을 완료하여 전달 함.
-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 뿐 아니라 설 명절 부모님 댁을 방문한 자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노인돌봄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빨래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애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하여 위천면 담당 독거노인생활지원사의 빨래수거·배달 지원

8) 사진



마을이장 빨래 수거 및 배달 봉사



명절맞이 독거노인 이불빨래 지원



빨래방 세탁 봉사

2020년 사례

농어촌 오지(벽지)마을 비상용 구급함 비치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19-229	분야	도시안전
분과	도시소방분과	사업구분	도정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요약	· 약국이나 보건소가 없는 벽지(오지)마을은 간단한 약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을 119가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함.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간단한 응급처치 약품을 비치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119 출동을 줄임.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000	10,000	0	0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사업위치	도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사업내용	· 약국이나 보건소가 없는 오지마을 구급함 배부대상 조사 - 시군별 11개 마을 · 구급함(응급처치 약품 등) 구입 및 배부 : 200개 - 구급함 세트 구성 : 소독용 에탄올 등 15종			
사업비 세부내역	· 구급함(응급처치 약품 등) 구입 및 배부 - 구급함 200개 × 50천원(단가) = 10,000천원			
추진계획	· 구급함 비치 대상 마을 조사 및 선정 : '20. 3~4월 · 구급함(응급처치 약품 포함) 구입 : '20. 5월 ·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구급함 배부 : '20. 6월			

도내 가야사 연계 증강현실 조성사업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19-7	분야	문화관광
분과	문화관광분과	사업구분	도정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요약	· 가야사 보유사군의 고대역사 문화를 활용한 증강현실(AR) 구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콘텐츠는 있으나 스토리가 없는 지역문화유적지, 박물관, 유구한 도시 문화관광 유적지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가야의 거리에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구축 ·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가야사 콘텐츠에 재미요소와 교육요소, 사업성을 갖춘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로 가야사 확산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0,000	100,000	0	0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사업위치	경남 도내 가야사 유적 보유 시군			
사업내용	· 제4의 제국 가야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개발 사업비 지원 - 가야사 박물관, 문화관광유적지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게임적 스토리 라인부여, 모바일을 통해 시각적으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 기존 가야문화유산의 ICT콘텐츠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증강현실콘텐츠 제작			
사업비 세부내역	· 가야사 연계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지원(2건) 98,000천원 · 지원작 선정 심사회의 2,000천원			
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20. 3월 ~ 4월 · 선정심사 및 지원금 지급 : '20. 4월 · 대가야 증강현실 사업추진 : '20. 4월 ~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 12월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19-188	분야	문화관광
분과	문화관광분과	사업구분	도청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요약	- 경상남도에서도 도민이 직접 지역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음. 이렇게 제작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배리어프리화 작업을 하여 지역 내 도민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지역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활용하여 도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시행되는 영상/영화/미디어 교육 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편영화 기준 편당 배리어프리화 비용을 10,000천원 할 경우 10편의 단편영화를 배리어프리화할 수 있음. 이러한 사업을 장려화하여 매년 장편 1편, 단편 1편의 영화를 배리어프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0,000	100,000	0	0
사업기간	2020. 3. 1. ~ 2020. 12. 31.			
사업위치	경남도			
사업내용	- 경남도에서 제작된 영화의 배리어프리버전 영화제작 지원 - 화면해설원고, 내레이션 녹음, 자막 등의 제작비 지원 - 제작된 배리어프리영화의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비 세부내역	-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지원 (3~4건, 80분기준 20,000천원 정도) 95,000천원 - 지원작 선정 심사회의 5,000천원			
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20. 3월 ~ 4월 - 선정심사 및 지원금 지급 : '20. 4월 - 배리어프리영화제작 : '20. 4월 ~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 12월			

한 여름밤의 이야기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19-143	분야	문화관광
분과	문화관광분과	사업구분	도시군연계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요약	· 명정동은 통영시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과 많은 이야기 꺼리를 품고 있는 곳으로 청년과 노인이 만남의 장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 및 영상화하여 미래세대에 활용함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000	5,000	5,000	0
사업기간	2020. 05. 01. ~ 2020. 10. 31.			
사업위치	통영시 가죽고랑2길 24 1층			
사업내용	· 한 여름 밤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선정하고 영상 기록물화 - 정당새미, 충렬사, 해방다리, 가죽고랑, 하동집, 서피랑 등 - 통영시 문화원과 연계사업으로 향토사료집 채록 자료 공유하여 현대감각의 영상 콘텐츠 제작 · 삽화를 넣은 동화책 제작			
사업비 세부내역	· 영상제작 인건비 4,000천원 · 영상 및 사진 기록 4,000천원 · 삽화를 넣은 동화책 제작(50권) 2,000천원			
추진계획	· 어르신들의 이야기 선정 : '20. 5월 · 이야기 마당 운영 : '20. 6월 ~ 9월 · 기록사진 및 영상 제작 : '20. 10월			

경상남도 주요 관광지 점자 리플릿 제작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19-158	분야	문화관광
분과	문화관광분과	사업구분	도정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요약	·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리플릿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0,000	50,000	0	0
사업기간	2020.			
사업위치	경상남도 전체			
사업내용	경상남도 점자 관광안내책자 제작			
사업비 세부내역	· 산출근거 : 5,000부 × 10천원 ※ 전국 시각장애인 수(252천명), 경남 시각장애인 수(17천명) - 보건복지부 통계('19. 4)			
추진계획	· 경남 점자 관광안내책자 제작 계획수립 : '20. 1월 ~ 2월 · 경남 점자 관광안내책자 제작 : '20. 3월 ~ 6월 · 경남 점자 관광안내책자 배포 : '20. 7월 ~			

보물섬 드론 체험장 조성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19-203	분야	산업경제
분과	산업경제분과	사업구분	도시군연계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요약	·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인근에 '드론 체험장 조성'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65,000	32,500	32,500	0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0. 30.			
사업위치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2 · 사업주관 : 남해군 · 사업규모 : 드론체험장 1,700㎡ 조성			
사업비 세부내역	· 부지정지작업(1,700㎡) 5,000천원 · 보관소(컨테이너 등 3개) 20,000천원 · 사각그물망(1,300㎡) 10,000천원 · 드론장비(연습용 10, 레이싱용 등 10) 20,000천원 · 기타 운영시설(간판, 편의시설, VR 등) 10,000천원			
추진계획	· 체험장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 '20. 1~8월 · 드론장비 및 운영시설 구비 : '20. 9~10월 · 체험장 운영(남해군 직영 또는 위탁) : '20. 11월 ~			

물놀이 수난사고 위험 경보시스템 설치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19-215	분야	도시안전
분과	도시소방분과	사업구분	도정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요약	물놀이 관리지역에 주야간 식별 가능한 LED 및 인체감지 센서가 내장된 경보시스템 설치로 물놀이 위험지역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0,000	50,000	0	0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사업위치	경상남도 내 물놀이 위험구역			
사업내용	도내 19개소 설치			
사업비 세부내역	· 수난사고 방지 위험경보시스템 구입 및 설치 - 경보시스템 19개 × 2,624,750원(단가) = 49,870,250원			
추진계획	· 위험경보시스템 설치 대상 조사 및 선정 : '20년 3~4월 · 위험경보시스템 설치업체 계약 : '20년 5월 · 위험경보시스템 설치 : '20년 6~7월			

2021년 우수사례

도서면 공용버스 노인 탑승자 안전도우미 자원 사업

1) 접수현황

신청자	통영시 한산면	분야	산업경제
분과	산업경제분과	사업구분	지역주도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사업 필요성	○ 한산면 전체 인구 대비 48%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임 ○ 도서면 공용버스 안전 도우미 채용으로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공용버스 이용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도서면은 지리적 여건상 공용버스 외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시내에서의 생필품 구입 등 무거운 짐이 있어도 공용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교통이 매우 취약함. - 또한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탑승자 대부분이 노인이며, 거동불편으로 승·하차 시 부축이 필요함. - 도로 또한 구불구불하여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 운전기사의 노인 탑승자의 무거운 짐 싣기 등 버스 정차시간 지연으로 과속 운행 등 안전운행에 위협을 받고 있음.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5,000	25,000	0	0
사업기간	2021. 1월 ~ 2021. 12월.			
사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일원			

사업내용	○ 공용버스 고령 탑승자 승·하차 도우미 선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채용인원 : 2명(버스 5대× 2명/1일, 오전 오후 교대근무) ○ 탑승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 부축 및 무거운 짐 운반 도움 ○ 관광객들에 관광안내 도우미 역할
사업비 세부내역	○ 사 업 량 : 10명/1일 (버스 5대× 2명/1일) ○ 인건비 68,720원*30일*2명*12월/2=24,740천원 ○ 안내도우미 조끼 구입 30,000원*2명*2벌=120천원
기대효과	○ 공용버스 고령 탑승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 버스 정차시간 단축 등 운전자 안심운행으로 안전한 대중교통 확보 ○ 안전 도우미 채용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안내 도우미 역할 병행

경상남도는“스쿨존, 불법주정차 안된 DAY”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20-527	분 야	건설교통
분 과	도시소방분과	사업구분	도정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 요약	○ 올바른 교통문화 형성과 스쿨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경남 504개 학교에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사업 추진 제안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6,000	56,000	0	0
사업기간	2021. 1월. ~ 2021. 12월.			
사업위치	창원시 관내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경상남도 50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및 불법 주정차 차량 ○ 사업내용 :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 연중 상시 캠페인 시행 - 불법 주정차 경고 안전 토시 : 매월 첫째주 경남 20개 시군구에서 경남 녹색어머니 연합회원들이 각 학교 앞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안전경고 토시를 끼워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시행을 시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자 함. 그리고 토시를 사이드미러에 끼우게 되면 노랑 사이드미러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에게는 시각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스쿨존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을 예방하고, 시각적으로 궤도 효과도 있다고 본다. 토시는 재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일회용이 아니기에 도민들에게 안전용품 지급 용도로서도 사용 되어질 수 있다. 토시는 천으로 되어 있어 적용시 차량손상도 없이 안전하			

	다. - 스쿨존 횡단보도 내 안전 햇빛 가림막 설치 : 여름철 햇빛에 교통 봉사 인력 및 아이들의 횡단보도 대기 시 햇빛을 차단해주며 노란색 파라솔을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이 대기하고 서 있는 공간임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남 내 시단위(창원은 구)에 시범 설치하고자 한다.
사업비 세부내역	○ 불법 주정차 금지 토시 제작 - 1SET 1,600원(인쇄포함) / 20개 시군구 지역당 1,000 SET : 약 3,200만원 ○ 스쿨존 안전 파라솔 설치 (시(市)지역 1개소씩 시범 설치) - 1개소 200만원(인쇄포함) 약 2,400만원
추진계획	○ 현지조사 : 2021. 3. ○ 설치완료 : 2021. 5.

경남도 도내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지급제안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20-87	분 야	환경신림
분 과	환경신림분과	사업구분	도정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 요약	○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를 지원하여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내용임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30,000	130,000	0	0
사업기간	2021. 1월 ~ 2021. 12월			
사업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남도청우체국) 경남도 청 관내 시군			
사업내용	○ 개 요 : 현재 경상도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역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관경 중에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손수레 또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 및 재활용품 등을 싣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를 지원하고 지급하여 거리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내용임. ○ 현황 및 문제점 : 경남도내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음.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거의 다 홀로 지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대부분임. 경상도 도내 18개 시군에 지역			

	의 길거리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인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매우 노출로 상존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사업비 세부내역	○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과 시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산출하여야 함
사업효과	○ 경남도 도내 18개 시군에 지역에서 힘겨운 노년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도내에 거주지등지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거리에서 작업자들에게 폐지수거 작업시 안전장비인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고 지급하여 시행을 추진한다면 기대효과도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문화의 빛으로 살아가는 상상력임대사업소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20-289	분 야	문화관광
분 과	문화관광분과	사업구분	도시군연계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 요약	○ 주민생활 요충지에 위치한 10년 이상 방치된 농협의 지하공간(구, 하나로마트 / 500m)을 재생 ○ 청년공동체(농업인) 창업, 문화예술 공동체 오픈마켓, 상설공연장 운영으로 농촌형 커뮤니티공간 활용(로컬푸드+로컬컬쳐) ○ 상상력과 실험을 전제로 지역 기반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문화정책과 사업지원 공유 플랫폼 구성내용임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300,000	150,000	150,000	0
사업기간	2021. 1월 ~ 2021. 12월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14-16 (대동리, 농업인회관) 2층 거창군농업회의소			
사업내용	○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업회의소, 로컬푸드, 청년공동체 및 문화예술공동체 상호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 지하공간 리모델링(도내 공공디자인/공공건축 자문단 구성과 워크숍 진행, 청년 건축가 및 지역 공방, 설치예술 활동가가 직접 리모델링에 참여) ○ 전체 위탁 운영주체, 공간별 상설 운영주체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크리에이터(문화이장) 양성과정 운영(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 문화이장 발굴 및 운영은 거창군 자체 기획			

	○ 2020년 기본시설 조성 후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협력)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사업,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연계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기획자 양성교육, 문화우물사업 연계로 서부 경남 플랫폼 기능 확대 가능
사업비 세부내역	○ 공간 리모델링 : 250백만원(시공 및 필수 기자재 설치) ○ 커뮤니티 기반조성 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 - 공공디자인 공공건축 워크숍과 실행(5백만원) - 유희공간 재생 사례 아카이빙(5백만원) - 운영주체 발굴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10백만원) - 공간활용 프로그램(상설 / 정기) 운영지원(30백만원)
사업효과	○ 지역기반 크리에이터(문화이장)의 역량과 실험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및 지역활성화, 공동체 형성의 사례 창출

경남청년학교(사회초년생이 필요한 소비와 투자에 관한 강의)

1) 접수현황

접수번호	2020-525	분 야	산업경제
분 과	청년분과	사업구분	청년참여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 요약	○ 청년들에게 금융, 권리, 혜택, 법률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들을 전문가들의 강의 및 안내서를 통해 교육하는 사업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0,000	100,000	0	0
사업기간	2021. 3월 ~ 2021. 11월			
사업위치	경상남도 청년센터 청년온나			
사업내용	○ 청년센터 공간을 활용한 교육강좌 개설(상·하반기) - 예비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교육 실시(경제, 금융, 부동산, 법률 등)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강좌 실시 -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 책자 제작 및 배포			
사업비 세부내역	○ 기본강의 : 13,000천원 - 강사비 360천원×20회=7,200천원 - 강사교통비 120천원×20회=2,400천원 - 다과비 30명×3천원×20회=1,800천원 - 사무용품비 1,600천원×1식=1,600천원 ○ 주문형 강의 : 27,000천원 - 강사비 250천원×4회×6개월=6,000천원			

	- 재료비 600천원×4회×6개월=14,400천원 - 강사교통비 120천원×4회×6개월=2,880천원 - 다과비 3천원×30명×4회×6개월=2,160천원 - 사무용품비1,560천원×1식=1,560천원 ○ 홍보인쇄비 : 20,000천원 - 홍보 및 책자제작 20,000천원×1식 등
추진 계획	○ 사업공고 및 사전 수요조사 : 21. 1월~2월 ○ 사업시행(상반기) : 21. 3월~6월 ○ 참여자 피드백 및 하반기 수요조사 : 21. 7월 ○ 사업시행(하반기) : 21. 8월~11월

시골길의 재발견, 걸으며 즐기는 문화거리 조성

1) 접수현황

신 청 자	진주시 사봉면	분 야	산업경제
분 과	산업경제분과	사업구분	지역주도형

2) 제안사업 구체화

제안내용 요약	○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유흥지 보다는 인근의 소외되었던 관광지 방문 수요가 늘고 있어 그에 맞춰 문화거리 조성이 절실함 ○ 최근 마을에 정크아트 예술가의 작업실과 한옥도서관 등이 들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된 마을길을 정비하여 천주교의 전국적 명소로 손꼽히는 천주교순교성지(장찬문 순교자의 묘)와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하고자 함			
소요예산(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5,000	25,000	0	0
사업기간	2021. 3월 ~ 2021. 6월			
사업위치	진주시 사봉면 중촌마을, 죽향마을 일원			
사업내용	○ 정크아트 전시관 및 전시거리와 연계한 벽화거리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조성(포토스팟 설치) - 위 치 : 사봉면 죽향마을 일원 - 사업량 : 50천원/1m²×150m²=7,500천원 ○ 디자인조명등(보안등) 설치 : 5개소 X 2,000천원 = 10,000천원 ○ 골목길 안내 이정표 및 정크아트 구조물 설치 : 2,500천원 ○ 낡고 오래된 마을길 정비를 통한 꽃길 조성사업			
사업비 세부내역	○ 벽화거리조성(포토스팟) : 벽화 150m² x 50천원 = 7,500천원 ○ 디자인조명등(보안등) 설치 : 5개소 X 2,000천원 = 10,000천원			

	○ 골목길 안내 이정표 및 정크아트 구조물 설치 : 2,500천원 ○ 꽃길조성 : 난간화분 100m × 50천원 = 5,000천원
사업효과	○ 기존 자원(마을길)을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으로 참채된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음 ○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마을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해결하여 주인의식 고양

■ 부록 1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참여가 만드는 일상의 행복 주민참여예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사회혁신추진단

(제정) 2009-02-05 조례 제 3377호
(전부개정) 2012-01-12 조례 제 3684호
(일부개정) 2018-06-28 조례 제 44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개정 2018.6.28>
2. “주민참여예산제”란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8.6.28.>

제3조(법령준수 의무)

-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 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5.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 지원
 6.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 ② 도지사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도지사가 수립한 해당 연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제9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예산편성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6.28>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18.6.28>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6.28.>

제11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 실·국·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도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선정, 시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제1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

제20조(지역연구회의 설치)

-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연구회(이하 “지역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개정 2018.6.28>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지역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역연구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의견반영)

- ① 지역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도민예산학교 운영)

- ① 도지사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위원, 지역연구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강의 및 주민참여 방법을 교육하는 도민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③ 도민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

- ① 위원회·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 ① 도지사는 위원회·지역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역연구회·도민예산학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2 ■

재정 용어



색인 - 재정용어

가용자원	120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124
감채기금	120	보증채무부담행위	125
결산	120	보통세	125
계속비	121	부담금	125
공유재산	121	부채	126
관리채무상환비율	121	불용액	126
국고보조	122	비용	126
국고보조금	122	사고이월	126
국세	122	사업예산제도	127
금고	122	성과주의 예산제도	127
기금	123	성별영향평가사업	127
기본경비	123	성인지 예산제도	127
당기순이익	123	수익	128
민간이전경비	123	세외수입	128
민간투자사업	124	세입	128
명사이월비	124	세입세출외현금	128
목적세	124	세출	129

수의계약	129	이전수입	133
순계예산	129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134
순세계잉여금	129	일반회계	134
시·도비보조금	129	일사차입금	134
사군 조정교부금	130	잉여금	134
업무추진비	130	자본지출	135
여성정책추진사업	130	자산	135
인건비	130	자체수입	135
예비비	131	자치구 조정교부금	135
예산	131	재정건전화계획	135
예산과목	131	재정분석	136
예산대비 채무비율	131	재정자립도	136
예산안의 의결	132	재정자주도	136
예산의 전용	132	재정진단	136
예산의 종류	132	조세지출예산도	137
예산의 확정	133	주민참여예산도	137
예산편성한도액	133	중기지방재정계획	137
예산총계주의	133	지방공기업	137

지방교부세	138	통합재정수지	1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8	투자사업 심사	143
지방세	138	특별교부세	143
지방의회경비	139	특별회계	144
지방재정조정제도	139	품목별 예산	144
지방채	140	회계	144
지방채 발행계획	140	회계연도	144
지방채발행 한도액	140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45
지출결의서	140		
지출원인행위	141		
채권	141		
채무부담행위	141		
총계예산	141		
추가경정예산	141		
출납폐쇄기간	142		
출연금	142		
출자금	142		
최저운임수입보장	143		

주요 재정용어 해설

■ 가용자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자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자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관리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times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정책임 확장행위)의 잔액(※ 아사 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 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나 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 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 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 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 (이월금 + 국·도비 집행 잔액)}$$

■ 비용(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 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 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

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 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 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 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text{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와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税)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税)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税)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 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사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 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 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과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 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